

「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3. 12. 18. 개정 판 (시행 2023. 4. 1.) → 2024. 11. 25. 개정 판 (시행 2024. 12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76/compare?from=1494&to=1630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2:09:44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“산학협력중심교수”는 학과(부) 또는 <u>스미스학부대학</u>에 소속되어 취·창업분야,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. ② “연구중심교수”란 학과(부) 또는 <u>스미스학부대학</u>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. 비전임교원의 “연구교수”(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)와는 구분된다. ③ “강의중심교수”란 학과(부) 또는 <u>스미스학부대학</u>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. ④ “교육중심교수”란 학과(부) 또는 <u>스미스학부대학</u>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. ⑤ “국고사업중심교수”란 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(강의)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. <신설 2021-06-07>	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“산학협력중심교수”는 학과(부) 또는 <u>교양교육원</u>에 소속되어 취·창업분야,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.(개정: 2024. 11. 25.) ② “연구중심교수”란 학과(부) 또는 <u>교양교육원</u>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. 비전임교원의 “연구교수”(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)와는 구분된다.(개정: 2024. 11. 25.) ③ “강의중심교수”란 학과(부) 또는 <u>교양교육원</u>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.(개정: 2024. 11. 25.) ④ “교육중심교수”란 학과(부) 또는 <u>교양교육원</u>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.(개정: 2024. 11. 25.) ⑤ “국고사업중심교수”란 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(강의)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. <신설 2021-06-07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“산학협력중심교수”는 학과(부)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취·창업분야, 산학협력분야의 교육 및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.(개정: 2024. 11. 25.)
- ② “연구중심교수”란 학과(부)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. 비전임교원의 “연구교수”(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전념하는 비전임교원)와는 구분된다.(개정: 2024. 11. 25.)
- ③ “강의중심교수”란 학과(부)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.(개정: 2024. 11. 25.)
- ④ “교육중심교수”란 학과(부)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.(개정: 2024. 11. 25.)
- ⑤ “국고사업중심교수”란 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(강의)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